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104801 판결 [연대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5. 10. 23.

판결 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2,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 건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투자계약서 작성

1) 피고는 2013. 12. 12. 원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원고를 "갑"으로, 예술개발주식회사(이하, 예술개발이라고 한다), D, E, 피고를 각 "을"로 한 아래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1투자계약서라고 한다)의 "을4"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1 이 계약은 "을"이 예술개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함에 있어 "갑"이 금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의 투자금액은 1,000만 원, 투자기간은 1개월, 투자 상환금액은 3,000만 원, 투자금의 상환일은 2014. 1. 12.이다.

3 투자금의 보증을 위해 을이 갑에게 날인하여 공증용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4 투자금의 지급은 예술개발의 신한은행 계좌(100-0228-891209)로, 투자금의 상환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F)으로 한다.

5 갑은 을이 투자금 상환기일을 어길 시 을에게 즉시 법적 상환 최고권을 행사하며 투자금 상환약정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액으로 상환약정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3. 12. 17. 원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원고를 "갑"으로, 예술개발주식회사(이하, 예술개발이라고 한다), D, 피고를 각 "을"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2투자계약서라고 한다)의 "을3"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3) C은 2013. 12. 12.과 2013. 12. 17.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의 피고 자필서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의 금원지급

원고는 2013. 12. 12. 예술개발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17. 예술개발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추심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주문진농업협동조합을 각 제3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30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주문진농협으로부터 2014. 9. 16. 6,271,881원을, 2014. 9. 18. 2,561,758원을 각 추심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진정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② 투자계약서는 각 피고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에 임의로 권한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이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피고가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날인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 ② 투자계약의 성질

피고는 2013. 12. 12.자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2013. 12. 17.자투자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그 중 피고의 채무자 주문진농협으로부터 8,833,639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1개월 후인 2014. 1. 12.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1개월 후인 2014. 1. 16.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사자 사이에서 투자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목적이 오로지 예술개발의 운영비 조달에 있고, 투자사업의 성공이나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원금의 100% 또는 200%를 정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금전거래는 투자라기보다 전형적인금전소비대차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투자계약은 그 성질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상의 대여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초 추심일 전날인 2014. 9. 15.까지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1,684,932원 합계 11,684,932원과,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상의 대여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초 추심일 전날인 2014. 9. 15.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2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3,301,370원 합계 23,301,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로부터 2014. 9. 16. 및 같은 달 18. 추심한 금원 합계 8,833,639원을 위 각대여원리금 채권 합계액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4. 9.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② 투자계약상의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우선 충당한 다음, 그 나머지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3. 12. 12.자 원금채권에 충당하면, 결국 2013. 12. 12.자 대여원금 6,152,663원(= 추심금 8,833,639원 - (지연손해금 1,684,932원 + 지연손해금 3,301,370원) - 2013. 12. 12.자 원금 10,000,000원)과, 2013. 12. 17.자 대여원금 20,000,000원이 각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152,663원(= 6,152,66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추심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12. 12. 예술개발이 원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대한 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1, 2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3. 12. 17. 원고나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1투자계약서와 달리 2013. 12. 17.에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1, 2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 보증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D가 2013. 12. 17. 원고의 대리인 C의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1, 2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가 C에게 1,3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게 변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